

【 16 】 양주시 보육 조례안

제안연월일 : 2007 . 11 . 6 .

제 안 자 : 우순자 의원 외 6인

1. 수 정 이 유

본 수정조례안은 양주시장이 제출한 “양주시 보육 조례안”에 대하여 일부조항이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 요 내 용

공립보육시설을民間에게 위탁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재 위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음(안 제17조②)

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양주시 보육조례안중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7조(위탁계약)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하되,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재 위탁운영 할 수 없다.	제17조(위탁계약)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